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4나5670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4나5670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가단22592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서진권

피고, 피항소인B

변론 종결 2024. 10. 11.

판결 선고 2024. 11. 8.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가단22592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표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19. 11. 19.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을 2,722,29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722,297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표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19. 11. 19.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을 4,222,29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22,297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출약정 및 이자의 연체

1)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 6. 11. C에게 6,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변동이율에 변제기 2020. 6. 11.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대출약정상 지연손해금률은 약정이율에 연 3%를 더하되 최대 연 19%이다.

2) 이 사건 대출약정에는 C이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C은 2013. 7. 10.부터 2019. 11. 19.까지 매월 10일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다가, 2019. 12. 10. 이후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2020. 1. 10.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계약자 변경

1) C은 2010. 6. 17. 원고와 별지 표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2019.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인하였다.

계약자	C	피고
주피보험자	피고	피고
만기(생존) 시 수익자	C	피고
입원/장해 수익자	C	피고
사망 시 수익자	C	C

3) 원고가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해약환급금은 2019. 11. 19. 당시 6,923,904원에서 보험계약 대출원리금 2,701,607원(= 원금 2,690,000원 + 이자 11,607원)을 공제한 4,222,297원(= 6,923,904원 - 2,701,607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D은행에 대한 2024. 1. 23. 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11. 19. C의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등 변경 신청을 승인할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을 몰랐다가, C이 이 사건 대출약정상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한 다음 C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를 독촉하면서 뒤늦게 C의 책임재산을 조사하였다. 원고는 2022. 10.경 비로소 C의 무자력 및 위 보험계약자 등 변경의 사해성을 인식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3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1년의 제척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C이 2019. 11. 19.경 피고와 이 사건 보험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그에 따른 보험계약자 등의 변경을 신청할 당시 C은 약 6년 동안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였던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 및 그에 따른 위 신청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② 이 사건 대출금은 원고의 대출취급 금액상 비교적 소액으로서, 원고는 C이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한 뒤에도 변제를 독촉하는 것 외에 바로 그 책임재산을 조사하려 나서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원고가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의 해지 등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권리이기는 하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이고,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고 또한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특별한 제약이 없는 이상 채권자가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사회통념상 구체적인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형성한다.

앞서 든 증거, 제1심법원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정보시스템운영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제1심법원의 E에 대한 2023. 8. 24. 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2019. 11. 9.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현재까지 C 소유의 부동산은 없는 사실, C이 2019. 11. 9.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포함하여 80,000,000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C은 2019. 12. 이후 E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인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약환급금을 수령할 보험계약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은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킴으로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될 당시 C이 원고에 대하여 가졌던 이 사건 보험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당시 C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라고 보이므로 그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한편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추정된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1) 관련 법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법칙 또는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다237646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재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의 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 한도에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0다27174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한 뒤 원고로부터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2,69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될 당시 위 보험계약 대출금의 원리금은 2,701,607원(= 원금 2,690,000원 + 이자 11,607원)인 사실,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가 C에서 피고로 변경되면서 피고가 C의 위 보험계약 대출금 채무를 인수한 사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온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보험계약 대출금은 이 사건 보험의 약관상 대출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이 사건 보험과 일체를 이루는 채권·채무라고 보아야 하고, 그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금금이다. 피고가 위 보험계약 대출금 채무를 인수한 점에 더하여, 피고가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등 변경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여 오는 등으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 비하여 현재 피고가 지급받을 해약환급금은 증액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여 보험계약자 명의를 C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아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보장성 보험임이 인정되는 이 사건 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0,000원 이하의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고,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위 1,500,000원 부분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그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

한편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원금만 6,000,000원으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해약환급금 6,923,904원에서 위 보험계약 대출원리금 2,701,607원과 위 1,500,000원을 공제한 2,722,297원(= 6,923,904원 - 2,701,607원 - 1,500,000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위 2,722,29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2,722,297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종채

판사허일승

판사송승훈

별지